

獨島의 主權과 海洋 境界 劃定

朴 成 日

The Sovereignty of the Dokdo and Delimitation of the Sea

Abstract : Dokdo, a group of 33 small and rocky Islets, in the East Sea have been administered by Korea for years since 1953 and are currently occupied by Korean Police Unit.

Located about 217Km off the eastern border of Korea and 87Km east of Ulleung Island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Situated in the East Sea of Korea, Dokdo itself has valuable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 as well as another countries such as Russia, Japan, U.S.A. etc...

The first historical testimonies to Dokdo were in Korean documents referring to it as a part of an independent island district known as Ulleung Island(Usanguk), which was incorporated into Silla Kingdom in 512 A.D. in "1454 Sejong Authentic History". Historically, since at least 1881, the island has been called Dokdo by Koreans, meaning "Rock Island" or "Lonely Island". Also Korea, which regained a full sovereignty and have exercised it for decades continuously, keeps a small police detachment on the Island. That is, Dokdo is under effective control of Korea until today. Therefore Dokdo, which is a problem that is related to our territory and sovereignty, is clearly a cluster of Islands of Korea.

I. 序 説

일본은 2004년 초에도 그들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의 獨島¹⁾ 領有權 주장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격분하게 하더니, 2005년 을유년을 맞아서는 한 술 더 떠 주한 일본 大使가 외신기자를 험 기자간담회 자리라지만 한국땅 서울에서 한국 국민에 들으라는 듯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였다. 때를 맞추듯이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에서는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불간섭 주장과 일본 시마네현 지사의 "條例案은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사실을 확산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데에 힘 입어 어쩌면 불순한 의도의 명분 축적용인 듯한 "독도의 날" 조례 제정안을 상정·가결하고, 지사는 "이를 계기로 국가가 영토권 확립에 적극 임하기 바란다."고 주장하였다.²⁾

2) 독도라는 명칭은 海中에 흘로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은 전라도나 경상도 지방에서 쓰는 돌(石)의 방언이다. 따라서 독(石)으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뜻으로 독도로 불렸는데,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獨島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 중에는 독도를 독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다.

3)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0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현의회 의원 38명중 35명의 찬성으로 상정하였고, 이어 3월 16일에는 최종 토론마저 생략한 채 36명의 의원이 참석 33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 1명의 기권 등으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02월 22일은 1905년 01월 28일 각의에서 독도를 자국령으로 할 것을 결정한 데 이어 같은 해 시마네(島根)현 지사가 告示 제40호를 통하여 오기(隱岐)군의 일부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이다. 無主地 선점을 그 법적 근거로 하는 이 독도 편입은 오래 전부터 한국 영토였던 관계로 무주

또한 실제 한국인만이 거주하고 있는 독도에 거주하지도 않는 일본인이 호적을 옮겨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내 우파나 일부 정치인들이 간헐적으로 주장하는 그들의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독도는 대한민국의 主權이 행사되는 고유의 영토이며,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라며, 이제껏 그 전략이 무대응이거나 소극적이고 무시적이었다.

이는 한국경찰이 국토방위 차원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고, 實效的 占有 상태에 있는, 주권하에 있는 영토에 대하여 맞대꾸하며 들먹여 국제 이슈화되고 紛爭地域化³⁾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한국 땅으로서 현재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독도를 굳이 한국 땅이라고 우길 필요도 없으므로, 시끄럽게 쟁점화되고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각인되어 국제기구 등에 회부되는 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사회나 국제재판소 등에 분쟁지역임을 기록으로 남기

지가 아니다. 그런데 시마네현 의회는 단지 이 고시를 근거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한국이 반세기에 걸쳐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효 지배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주일 한국 대사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방문해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상정은 역사적·지리적·국제 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라며, "일본측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상태이다.

4) 세계적으로 해양 경계획정에 대한 분쟁은 해결보다 미해결 상태가 더 많은데, 현재 73개 도서로 인하여 31개 지역에서 그 영유권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고 인식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임이 틀림없는데, 무대응 무시전략으로만 나갈 수 없다.

더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언급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시적 무대응에 편승하여 그들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관료들이 되풀이 하여 시도하는 영유권 주장이라든가 후소사(扶桑社) 출판 공민교과서 내의 독도의 일본 땅 표기 등은 국제사법재판소⁴⁾(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든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Int'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⁵⁾등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조용한 무대응이 일본의 억지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독도에 대하여 두 나라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렇다고 ICJ의 판단에 맡길 사유도 되지 않는 영토 문제를 일본의 提訴 장단에 맞춰 應訴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영토로 확고한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에 국제사회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⁶⁾

5) 본부가 和蘭 헤이그에 위치한 ICJ는 위원장 2명과 재판관 13명 등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인중 2인 이상이 同一國人이어선 안되도록 하고 있다. ICJ는 국적재판관 제도를 두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편파성에 대비하고 있으나, 현재 일본인 오와다 히사시씨(74세)가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국적재판관”이란 ICJ에서 특정사안이 심리될 때 재판관중에 분쟁 당사국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을 경우 해당국에서 선임한 自國國籍의 재판관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있어 韓日간 분쟁당사국이 되면 우리도 1명의 국적재판관을 둘 수는 있다. 재판소 구성은 9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재판관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되며,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재판소장 또는 그 대리 재판관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하여 可否를 결정한다. ICJ는 UN의 주요 사법기관이지만 한계를 갖고 있어, 무력분쟁이 발생하여 UN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상 특정국가에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佛語와 영어로만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국제법상 ICJ에의 분쟁제소는 일방적 제소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 당사국간의 합의하에 제기된다. 그러나 일본이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쟁화하는데 성공한다면, 그 일방 당사국인 한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이 응소하지 않으면 재판소 관할권은 성립하지 않지만, 유엔안보리에 일방적으로 삼정될 수 있는 있다.(ICJ규칙 제38조 제5항). ICJ에서의 영유권 판단 근거는 입법행위 여부, 행정적사법적 권리 행사 여부 등이다.

5)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국(현 EU포함 145개국) 회의에서 대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출되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아프리카권 5명, 한국 박춘호 교수를 포함 아시아권 5명,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권 4명, 서유럽 및 기타권 4명, 동유럽권 3명 등으로 되어 있다. 임기는 9년이며,,재선도 가능하다. 이 재판소는 국제해양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국제재판소이지만 협약 당사국이 그들간 분쟁을 반드시 ITLOS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국은 ITLOS나 ICJ, 협약 부속서 VII 또는 VIII에 규정된 종재재판소나 특별종재재판소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다만, 특별종재재판소는 어업,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 해양과학조사, 항행(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및 투기에 의한 오염 포함)과 관련된 분쟁의 중재만을 다룬다.

6) 독도의 領有權에 대한 오인은 2005년 02월 02일(현지시간) 프랑스 4대 방송 중 하나인 아르테 -TV(ARTE-TV, 1991년 설립된 프랑스·독일 연합방송국으로 7개 국어로 전유럽에 방송)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내막, 일본(3) : 領土”라는 교양 프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땅이라고 방영하였다. 이는 영향력 있는 해외 유명 방송국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제 여론을 억지로 조장,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소로 끌고 갈려는 의도일 수 있다. 이는 모든 재판이 실체적 진실 못지 않게 재판관의 主觀이 가미된 법정기술에 의해 그 결과가 좌우되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이 억지를 부리며 이 작은 섬에 집착하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주권⁷⁾으로 독도는 단순한 領土 문제를 넘어 유사시 긴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또는 한국과의 해양 경계 획정과 주변 해양 관할권 문제로 직결되어 독도가 그 기점이 되고, 이는 주변 해양 해저 자원과도 밀접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독도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의 영토임을 서술하고 해양 경계 획정상의 기점이 되어야 함을 고찰하였다.

II. 독도의 현황 및 한국 領有權에 대한 근거

1. 독도의 일반 현황

(1) 위치

독도의 위치는 131°52'.5E, 37°14'.2N 인데, 울릉도 도동으로부터 동남쪽방향으로 약 87.4Km(죽변향으로 부터는 216.8km),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오기섬(壹岐島)으로부터는 약 160Km 떨어져 있어 한국의 울릉도로부터의 거리가 시마네현보다 약 73Km 정도나 가까운 거리⁸⁾이다.

(2) 행정구역 및 관리

東島와 西島 및 기타 부속 島嶼 33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섬은 당초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35필지)”로 편제하였다가, 2000년 7월 01일 부터는 도동리에서 분리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산1~37번지”로 행정 편제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관리청은 1982년 11월 독도 보호를 위하여 독도에 대하여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을 제정하였고 1999년 6월 01일 부터는 이 관리지침에 의해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입도 금지⁹⁾, 시설물 설치 및 관

7) 主權이라 함은 역사적 개념으로서 다양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國內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이고, 國외에 대하여는 獨립의 권력을 의미한다.¹⁾ 즉 입법·행정·사법이라는 국가 諸權力의 기초로 되는 지배권력을 말하며, 권력이라 함은 국가 기관이 행하는 合法의 強制力を 말한다. 따라서 주권은 最高性·獨立性·始原性·自律性·單一不可分性·不可讓性·恒久性·實定法·超越性 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데, 대내적으로는 국가 意思나 국가격 질서를 全般的最終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으로서의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一國의 自主獨立을 의미하는 獨립성을 으뜸으로 한다.

8) 한국 죽변향에서 울릉도, 독도까지는 약 130Km, 217Km이며, 일본 본토인 시마네현으로부터는 220Km 거리이다. 국제법상 至近性은 영유권 판단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지만, 독도에 있어 한국은 울릉도로부터의 거리를 일본은 본토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그 근접성을 주장하고 있다.

9) 황벽현 당시 독도 有人島化(등대지기 외) 국민운동본부 의장은 문재인 변호사를 통해, 2000년 5월 독도의 일반 국민에 대한 상륙 입도 금지 조치는 대한 민국 현법상 “거주 이전의

리 등을 하고 있다.

(3) 면적 및 자연 동식물

현재 독도의 면적은 35필지 총 178,781m²(54,081평)인데, 이 중 東道의 면적은 65,058m²(19,680평), 둘째는 1.9Km, 평균수면으로부터의 標高는 98m이고, 西道의 그것들은 95,008m²(28,740평), 2.8Km, 168m이며, 그외 기타 島嶼는 18,715m²(5,661평)이다. 동도와 서도간의 거리와 수심 110m~160m, 3~10m정도이다. 이 작은 면적의 섬에는 1982. 11. 16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팽이갈매기, 곰새, 바다제비 등 희귀한 자연 동식물¹⁰⁾의 번식지이기도 하다.

(4) 명칭의 변화

① 1454년 세종실록에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부터 조선 세종대왕 8년(1426년)까지 于山島라 하였고,

② 1471년 조선 성종 2년 성종실록에는 三峰島라 하였으며,

③ 1794년 정조 18년 정조실록에는 可支島 또는 子山島라 하였고,

④ 1881년 울릉도 개척령에서는 독도 등으로 칭하였다.¹¹⁾

⑤ 1906년 조선 광무 10년, 울릉 군수 심홍택이 정부에 보고한 보고서에서는 「本郡所屬 獨島」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독도로 불린 처음 명칭이다.

(5) 독도의 등기상 관리

- ① 1968년 3월 13일 대한민국 국가보존등기
- ② 1971년 01월 14일 대한민국 건설부 첨기등기
- ③ 1976년 8월 19일 대한민국 해운항만청(현해양수산청) 제2회 등록

④ 1996년 8월 08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로 관리청 명
위 변경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간 문제로 기각되었다.

10) 1982년 한국 천연기념물 제336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독도의 흙에서 사는 동물로는 지렁이
.쥐나비·갈매기 등이 있다. 또한 식물학자 趙武衍은 1977년 8월
03일 독도 동부에 "곰솔 땅댕
이덩굴 줄사철·보리장나무가 세입개며루" 등 有人島에서만 볼 수
있는 5종의 나무 등과
"도깨비쇠고비·개이끼·마디풀·참소리챙이·깻잎챙이·청명이주·쇠무름·
번행초슬페랭이꽃·큰개미자리쇠비름·섬강때·땅채송화·섬기린초·선
괭이밥·깻사상·깻까치수영·박주가리·가마중·초종용·비속·큰방가지
똥·왕해국·개밀·강파·들피·좀바랭이·따·쇠보리·강아지풀·억새·섬모이풀
·잔디·개잔디·천문동·참나리" 등 36종의 풀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종성, 한국의 영해(법문사, 1985), 289쪽.

11)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세종출판사, 2000. 8, 31쪽
1881년 조선 정부는 겸찰사 李奎遠을 울릉도에 보내 사람의 살기에 적당한지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이 때 쓴 이규원의 겸찰일기의 하위에 개척령을 선포, 사람이 살도록 하고 이주를 권장하였다

(6) 독도의 시설물 현황

① 東島에는 한국이 설치한 1일 2인 교대의 광달거리 27
마일여 되는 有人 등대¹²⁾와 우리 경비대 경찰초소 및 막사
가 있으며, 796m의 등반로가 나 있고, 화물운반용
케이블카와 생산능력이 충분한 급수시설이 있다. 또한 전기
를 自給할 수 있는 발전기와 헬기장(121평) 및 행정전화¹³⁾
등 완벽한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다.

② 西島에는 한국이 설치한 선박의 接離岸을 위한 선착장·간이접안시설과 漁民宿所 및 550m의 등반로가 나 있으며 풍향풍속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상측정기 등의 시설과 수산물 건조장, 어민숙소, 급수시설, 발전기 및 인양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7) 독도의 자연조건

① 년평균 60회 정도의 氣象特報를 발령하며, 그 총지속 시간은 약 71일 정도이다.

② 바람은 夏季는 남서풍이 많이 불며 冬季는 북동풍이 많이 부는데, 평균 풍속은 4.3m/s , 최대 풍속은 34.7m/s 이다.

③ 기온은 평균 12.2°C 이며, 강수량은 평균 1,240.8mm이다.

④ 년중 맑은 날은 49일, 흐린 날은 143일이며, 안개 끼는 날은 45일, 降水日은 38일, 降雪日은 50일 정도 등이다.

(8) 독도의 주둔 및 주민현황

1953년 4월 홍순칠 독도 의용수비대장을 중심으로 결성된 20대 후반의 독도지킴이 33명은 강우량 많고 습기 많은 독도에서 전답 등 사재를 정리한 돈으로 무기와 식량을 구입하여 주둔하면서 3년 8개월 동안 영해를 침범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호와 충격전을 벌이기도 하고, 항공기로 중무장한 일본측과 북숨을 건 치열한 전투를 치르기도 하였다.¹⁴⁾

또한 1953년 이들은 독도의 동도 암벽에 韓國領이라는 영토 표지를 새겼다.

1987. 9. 23일 故인이 된 최종덕씨가 1965년부터 22년 동안 독도에 5평 남짓한 토담집을 짓고(주민등록전입 1981. 10. 14일) 전복소라미역 등의 채취 및 양식업을 하며 살았던 것을 始發로, 1986. 7. 08부터는 최종덕씨의 사위인 1961년생인 조준기씨가 그의 가족 4명과 송재옥씨와 더불어 1993년 8월 까지 독도에서 살다가 현재는 강원도 강릉으로 이사하였으며, 현재는 1940. 11. 17일 생인 김성도

12) 독도 등대는 1954년 8월 처음 한국의 무인 등대 설치로 운영되 오다가 1998년 12월부터는 유인등대로 승격되어 현재는 해양수산청 공무원인 6명의 등대인이 한 달간씩 2교대 근무하고 있다.

13) 1991년 한국통신에서는 공사비 20여 억원을 들여 둑도에 2대의 전화기를 설치하여 현재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0566)791-1991, 1227이며, KTF 무선전화 통화 역시 가능하다.

14) 홍순칠(1929 ~ 1987) 독도 의용 수비대장의 수기인 혜안刊
“이 땅이 뉘 땅인데”에는 독도지키기 투쟁비사를 통하여 치
열한 민족정신이 깃든 투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씨(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20) 가족 1세대 2명이 오정 어잡이 등의 생활을 하며 30여 년을 살고 있다.¹⁵⁾

III. 1982 유엔해양법상 도서 및 해양에서의 주권행사

1. 유엔해양법협약상 島嶼의 의의

한국의 영토인 독도가 국제법에서 정한 섬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1982 유엔해양법협약(1982 UNCLOS, The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¹⁶⁾과 관련이 있다.

이 협약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영토 개념으로의 島嶼는 滿潮時에도 水面위에 있고,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하며, 민간인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러나 “민간인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은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제3항).”는 규정에 따르면 영해(Territorial seas)나 접속수역(Contiguous waters)은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민간인 거주 및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지속 가능한 영토로서의 島嶼는 領海, 接續水域이외에도 EEZ(Exclusive Economic Zone : 排他的經濟水域) 및 大陸棚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육지 영토에 적용 가능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즉 이와 같은 島嶼는 海洋境界劃定의 基線¹⁷⁾ 설정이 가능하고, 육지 영토와 다름없이 독자적으로 영해, 접속수역, 200 해리 EEZ 및 대륙붕 등을 가질 수 있고,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의 領有權 문제는 곧 국가 주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오늘날에도 세계 몇몇 국가간에는 島嶼의 영유권 확보를 위한 첨예한 대립 양상¹⁸⁾을

15) 독도관련 참고자료, 해양수산부, 1997. 5. 13쪽. 김학준, 독도는 우리 땅(한줄기, 1996). 132쪽.

2005.3월 현재 독도에 호적을 둔 한국인은 1,000여명인데, 일본인은 3,300여명이다.

16) 1994년 11월 16일 발효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제2장에서는 領海 및 接續水域에 대하여, 제5장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 제6장에서는 대륙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7) 기선(Baseline)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육지쪽 기준점의 궤적으로, 영해기선에는 通常基線과 直線基線이 있다. 일본은 1998.1.1일부터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중국은 1996.5.5일을 기해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있다. 기선에 관해 각국은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통해 해안선을 기점으로 하는 통상기선을 채택하였는데, 그 후 해안선의 침식 등으로 인한 영해기점의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섬들이 들어선 지역의 경우 관련국간의 합의를 통해 외곽 도서 및 인공 건조물 등을 기점으로 할 수 있는 직선기선 방식을 보조적으로 허용했다(제7조 ~ 제9조).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 영해 및 접속수역에서의 주권 행사

(1) 영해에서의 주권 행사

연안국의 주권은 육지 영토 및 内水以遠의 그리고 군도국 가의 경우에는 群島水域以遠의 영해¹⁹⁾라고 부르는 인접지대 까지 미치며, 이러한 주권은 영해의 上空 및 海底와 下層土 까지 미친다. 영해에 대한 주권은 이 협약 및 기타 국제법 규칙에 따라 행사된다(제2조).

또한 영해의 한계에 있어 영해의 폭은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基線으로부터 12海里를 초과하지 않는 한계까지 모든 국가가 설정할 권리가 있으며, 영해의 外側限界는 基線上의 최근점으로부터 영해의 폭과 등거리인 모든 점을 연결한 선이다(제3조·제4조).

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通常基線은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축척 海圖에 표시된 沿岸低潮線으로 하며, 環礁上의 島嶼 또는 外廓에 암초를 가진 도서의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基線은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海圖上 적절한 기호로 표시된 암초의 해양 측 저조선으로 한다(제5조·제6조).

(2) 접속수역에서의 주권 행사

영해에 접속한 12마일의 일정수역으로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以遠으로 확장될 수 없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영토 또는 영해내에서의 關稅, 財政, 出入國管理 또는 衛生 法令의 위반방지 및 이를 범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 등 필요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제33조).

따라서 연안국은 자국의 영토나 영해 내에서 발생한 범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접속수역 내에서 그 규제가 가능하고, 이 접속수역 내에서 연안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 主權行使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의 권리와 관할권 및 타국의 권

18) 島嶼에 관한 영유권 분규는 1997년 1월 25일 현재 세계적으로 30건, 해양경제획정상 국제분규는 7건으로 해양경제획정상 島嶼관련 해역의 분규 7건을 보면, 카리브해의 Los Monjes(콜롬비아/베네수엘라)-Aves Island(베네수엘라/도미니카/St. 키쓰 및 네비쓰/St. 루시아/St. 빙센트 및 그레나다니스/영국/덴마크/아이슬란드), 북대서양의 Rockall(덴마크/아이슬란드/영국), 에게해의 Various Greek Aegean Islands(그리스/티어키), 남중국해의 Natuna Islands(인도네시아/베트남), 남태평양의 Lord Hawe Island(호주/뉴질랜드), 혹해의 Serpent Island(루마니아/우크라이나) 등이다.

19) 領海란 영토의 해안 또는 군도수역에 접속한 일정 범위의 수역으로서, 그 범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마일까지이다. 1982 유엔해양법협약은 세계 최초로 영해의 범위를 기선으로부터 12마일로 규정한 성문 국제법이다.

리와 자유가 해양법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領海以遠의 수역으로 그 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基線으로부터 200海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다(제55조·제57조).

해양법협약에 따라 이 수역은 해양자원에 대하여 당해 연안국에 배타적인 경제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수역이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들에 따르면 연안국은 EEZ내에서 다음과 같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沿岸國은 海底, 下層土 및 상부 수역의 생물 또는 비생물 자연자원을 탐사, 이용,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와 海水, 海流 및 海風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동수역의 경제적 탐사 및 이용을 위한 기타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제56조 제1항).

②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人工島嶼·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 해양과학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동조 제2항).

③ EEZ내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있어서, 연안국은 타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4. 大陸棚에서의 주권 행사

대륙붕은 영해 以遠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통하여 大陸邊界의 外緣까지 또는 大陸邊界의 外延이 200海里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基線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海底 및 下層土로 이루어진다(제76조).

대륙붕에 있어 연안국의 주권 행사는 다음과 같이 행사된다.

①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이를 탐사하고 그 자연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는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않거나 또는 그 자연자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가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없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이다(제77조 제1항·제2항).

②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이나 觀念的占有 또는 明示的 선언에 의존하지 않는다(동조 제3항).

IV. 역사적으로 본 독도의 영유권과 동해 표기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에 발견된 역사적·실증적 많은 자료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증명하여 주고 있다.

삼국사기 등 한국의 역사 실록이나 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 제3국의 공식문서와 지도 등에서도 한결같이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밝히고 나타내고 있다.

1. 한국의 역사적·실증적 측면의 독도 영유권

① 대략 5,000만년 전 화산 분출로 형성된 독도는 삼국사기에 등장하는데, 이 책의 신라본기와 열전에서는 서기 512년인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울릉도와 함께

신라 땅에 예속시켰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때부터 고려 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울릉도의 부속 島嶼로 관리되고 있다.

② 1432년 편찬된 「世宗實錄地理誌」²⁰⁾ 및 1454년에 완성된 「高麗史地理誌」蔚珍 縣條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于山島 및 武陵島 등 二島로 각각 표기하고 있는데, 두 섬은 울진현에 있으며,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③ 15세기 중반에 발행된 「朝鮮全圖」 및 「東國八道大總圖」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하고, 對馬島는 경상도에 속하는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④ 1488년 명나라 사신 董越이 황제 영종의 명을 받아 조선땅을 둘러본 후 작성한 見聞錄 朝鮮賦 4~5쪽의 「朝鮮八道總圖」에는 울릉도와 독도(于山島)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²¹⁾

⑤ 1531년 조선 성종 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²²⁾의 팔도 총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비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고 울진현에 속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⑥ 1881년 6월 울릉도 개척 후 1898년 5월 26일에는 조정에서 칙령 41호로 울릉군수 관할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이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 상륙하여 나무를 베고 아주까지 하려 하자 조선 조정에서 1882년 空島정책을 폐기한 것이고, 1989년 대한제국 학부의 大韓輿地圖와 1899년의 大韓全圖에서 한국 영토임이 분명함을 나타내고 있다.

⑦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불법 입국과 정착을 막고자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여 勅令 제41호를 반포, 그 제1조에서는 울릉도에 군(강원도 울진군 소속 울릉도가 아닌 울도군)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으

20) 東北 여진 해적들의 빈번한 침입으로 섬을 비우게 하는 空島政策이 한창 진행중이던 1432년에

편찬된 「世宗實錄地理志 강원도 울진현조」 기록에 따르면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 이 두 섬이 울진현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이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21) 부산 외국어대 김문길 교수가 일본 모대학의 고문서실에서 발견한 중국의 古地圖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 조선부(朝鮮賦)는 1717년 일본이 한자에 일본음을 달아 제작한 筆寫本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는 對馬島도 조선의 영토로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고 한다. 2005.3.02, Nate.com 연합 뉴스. 또한 대마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전북대학교 하우봉교수는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본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국회에서는 대일 강화회의에서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요시다 내각의 부탁을 받은 연합군최고사령부 맥아더장군의 만류로 대마도 영유권문제가 공론화 되지 않았다. “고 2005년 3월 17일 주장하였다.”

22) 1531년(조선 중종 26년)에 출간된 「신종 동국여지승람」과 이 책에 덧붙여진 팔도총도(우리 나라에서 인쇄본으로 간행한 가장 오래된 朝鮮全圖)에서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의 안 쪽에 표기하고 있으며 두 섬의 크기를 비슷하게 나타내고 있다.

로 울릉도를 영토로 선언하였으며, 屬島인 獨島도 관할토록 하여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²³⁾

반면 1904년 일본은 일방적인 韓日 협정서 체결 후 1905. 02. 06일 지방관청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竹島²⁴⁾로 호칭하면서 그들의 영토에 편입시키고, 당시 울릉군수를 찾아와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었다는 일방적인 사실을 통고하였다.

그러나 1900년 대한제국 칙령은 그들이 현재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 5년 앞선 것이다.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1907년 대한제국 자리 교파서 3종에서는 독도를 한국땅으로 명기하고 있다.

⑧ 1946. 01. 29 제2차 세계 대전 전승국인 연합국에 의해 일본의 침략 영토처리가 단행되었는데,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에서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관할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²⁵⁾

⑨ 1952.01.18 국무원고시 제14호(隣接海洋主權에 관한 대통령선언 ; 「이승만라인」)는 독도가 한국의 領土임을 명백히 하는 독도 主權宣言을 두고 있다. 이 선언 이후 한국은 53년 넘게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⑩ 1952. 8. 20일 결성²⁶⁾된 의용수비대가 1953. 4. 20 독도에 상륙하여 수비에 전념하였다.(재향군인회 울릉군 연합분회 결성준비위원회에서 洪淳七씨가 분회장으로 선

출된 후 독도 死守를 역설하면서 의병지원자 50명을 규합 결성하였는데, 1956.12. 25일 까지 독도 방위에 전념함)

⑪ 1953년에는 독도에 대한민국 領土碑를 건립하였다.

⑩ 1954. 8. 10에는 독도에 광달거리 17~27마일의 無人燈臺를 설치하였으며, 독도 풍경을 담은 우표 3종을 발행하였다. 이 해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한국은 거부하였다.

⑫ 195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警察守備隊가 독도를 경비하고 있는데, 1964년도에는 한국 경찰의 독도 퇴거를

23) 2005. 3. 시마네大 명예교수인 일본의 역사학자 나이토 세이추 (内藤正中)의 주장하였다. 나이토 교수는 교토대 대학원을 수료한 후 1955년 시마네大 강사를 시작으로 법문 학부장을 거쳐 1993년 퇴임하였다. 그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였다. 2005. 3. 17, 경향신문

24) 우리 나라 독도를 일본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다케시마(竹島) 또는 마쓰시마(송도)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섬을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1849년 프랑스에서는 리앙쿠르(Liancourt), 영국에서는 호넷(Hornet)이라 칭하여 海圖에 기입하고 있다.

25) 최종화, 앞의 책, 30쪽

26) 1950. 6. 25 전쟁으로 독도까지 병력을 동원하는 등의 영토 보호가 어려워 독도 관리에 소홀한 사이 일부 일본인들이 독도에 침범하여 「竹島(島根縣 隱岐町 竹島)란 표말을 세운 후 자기네 영토라면서 우리 어민들의 어로작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려, 울릉도 주민들의 항의가 심하였고 자구책 차원의 독도 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독도에 국기게양대와 막사를 건립하고, 오징어 판매대금으로 부산에서 무기를 구입 1,000톤급 일본 경비정의 독도 접근을 철저히 막았다.

일본은 요구하였다.

⑯ 1997년 한국은 독도의 東島에 선착장을 완공하였고, 1999년 3월 10일에는 독도에 有人 등대를 설치하여 1일 2인 교대 근무로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2. 일본 및 제3국의 역사적실증적 측면의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

① 1603 ~ 1866년 에도막부시대의 「日本邊界略圖」에는 동해를 朝鮮海로, 울릉도를 현재처럼 울릉도로, 독도를 우산도로 표기하고 있으며, 1785년 일본의 저명한 지도학자 하야시(林子平) 저술의 「日本三國通覽圖說」지도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를 각각 송도와 죽도로 표기하고 두 섬 모두를 일본 영토와 다른 색깔로 구분하여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조선의 것으로란 말이 덧붙여 있다.²⁷⁾

② 1705년 프랑스의 기욤 드륄이 제작한 「인도-중국지도²⁸⁾」의 일부에는 현 동해를 「東海 또는 韓國海」로 표기하였으며, 그 동안 「東海」라고만 썼다가 「또는 韓國海」라고 한 명칭이 처음 나타난다.

또한 1800년 「인도-중국지도」에서는 1705년부터 1800년 까지 「東海」를 「韓國海」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1805년 이 제작사의 「인도-중국지도」에는 5년 전의 지도와는 달리 「東海」를 「韓國海 또는 日本海」로 표기하고 있지만, 「日本海」라는 표기는 글자가 작다.

③ 1717년 일본이 한자에 일본음을 달아 제작한 필사본인, 고지도 朝鮮賦 朝鮮八道 總圖 4~5쪽에는 1488년 명나라 사신 董越이 황제(영종)의 명을 받고 조선땅을 둘러본 후 작성한 견문록 기록인 울릉도, 독도(우산도), 대마도 표기가 있다.²⁹⁾

또한 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편찬한 三國接壤地圖는 나라 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하였는데, 동해 가운데의 울릉도와 독도(당시 우산도)는 황색으로 표시되고, 그 옆에 조선의 것(朝鮮 / 持=) 이라 적어 조선 영토 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④ 1793년 러시아제작 地球儀에서는 동해를 韓國海로 표기하고 있으며, 1830년 제작 海佐全圖에서는 우산도(독도 포함)를 경상도에 속한 島嶼로 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832년 프랑스 「라뻬」 제독과 그의 아들이 만든 地圖는 동지나해를 「韓國海」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조선의 영향력이 동지나해까지 미쳤음을 나타내고 있다.³⁰⁾

27) 이는 2005년 3월 01일부터 동년 동월 17일 까지 인천광역시 구월동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9번째 전시회를 갖는 민간 「독도지킴이」의 독도관련 전시 자료 “삼국통람도설”에 수록된 “삼국첩양지도”에 나타나 있다.

28) 18세기 프랑스 地圖에서부터 과학적이고 정확한 世界地圖가 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늘날 「東海」 또는 「韓國海」란 명칭 표기가 당연한 중요한 자료이다.

29) 이것은 부산외대 김문길 교수가 2005년 3월 일본 모대학에서 발견한 지도이다.

30) 박성일,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독도의 주권, 1999, 8, 목포해

⑤ 대영도서관 보존, 영국인 로버트 월킨슨이 1802년 및 1808년 그린 아시아 지도에 동해가 「Gulf of Corea」로, 1805년 프랑스인 로베르 드 보공디가 그린 지도에도 동해가 조선해로 표시되어 있다.³¹⁾

⑥ “1830년 일본 승려 존토(Zonto ; 存統)가 그린, 미국 의회도서관 보관 세계지도 閣浮堤圖附日宮圖(염부제도부일궁도)³²⁾에는 동해를 조선해로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2005년 3월 28일 서울신문이 美의회도서관에서 확인한 지도로, 여기에 日本海는 현재의 동해가 아니라 도쿄 동쪽의 일본 연해로 그려져 있다.

⑦ 1876년 일본의 해군지도에서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고 있으며, 내무성은 조선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太政官(총리대신부)이 “울릉도와 독도의 건에 대하여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내무성에 내린 훈령³³⁾에서도, 당시 일본 해군이 제작한 “朝鮮東海岸圖”에서도 조선 땅임을 나타내고 있다.

⑧ 1910년 일본 제작 「朝鮮全圖」와 「일본 시네마(島根)현 全圖」에서도 독도를 한국땅으로 표기³⁴⁾하고 있으며, 1914년 일본 地理敎科書附圖에 독도를 죽도로 朝鮮領으로 표기하고 있고, 일제 강점하인 1923년 일본 학습사가 발행한 소학교 국사교과서에는 독도와 조선을 같은 색깔로 표시한 러·일전쟁 지도가 실려 있다. 또한 1936년 일본 육지 측량부가 발행한 공식 지도에 독도를 조선에 포함시켜 국경선을 그어 놓았고, 1937년 조선총독부 발행 수산시험장 보고 책자에서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1945년 일본 발행 沿岸誌에서는 독도를 朝鮮 동해안 섬으로 표기하고 있다.

⑨ 1951년 세계 제2차 大戰이 끝난 후 勝戰國인 영국이 미국 정부에 통보한 戰後 처리를 위한 영토규정을 담은 대일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전 최종 확정한 공식지도에 의하면 일본 영토의 범위에서 독도를 완전히 배제하여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³⁵⁾

양대 논문집, 59 ~ 64쪽

31) 서울신문, 2005. 3. 28, 5면.

32) 이 지도는 존토가 불교의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린 세계 대상지도 세 폭 가운데 한 점이다. 도서관에 함께 보관돼 있는 나머지 두 폭은 인도를 그린 天竺輿地圖, 수미산 등 불교의 세계 관을 표현한 世界大相圖이다.

33) 이 문서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독도연구보전협회와 독도학회가 사본을 입수하여 2005.03.15 발간한 소책자 “우리 땅 독도이야기”에서 공개하였다.

34)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인 50쪽 분량의 「大日本分縣地圖帖」에 포함된 「朝鮮全圖」와 「日本 시마네현(島根縣) 全圖」는 1910년 당시 일본의 民間 地圖 제작자인 이토 세이조(伊藤政三)에 의해 만들어져 도쿄에서 발행되었는데, 여기서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島嶼로 명시하고 조선땅임을 인정하고 있다.

35) 목포대 정병준교수는 2005.3.27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규정한 영국정부의 공식지도를 美국립문서 기록관리청(NARA)에서 발견, 공개하였는데, “이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전권 대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의 대일평화조약문서철에 보관되어

또한 독도 상공의 防空識別圈(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³⁶⁾ 역시 세계 제2차 대전후 미국에 의하여 설정되었는데, 당시 독도 상공의 방공식별권을 일본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국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한 것이다.

⑩ 1965년 야마베 겐타로의 논문 “독도문제의 역사적 고찰”에서 독도는 한국땅임을 밝히고 있다.

⑪ “1980년부터 4년간 주일 영국대사를 역임한 휴 코타지(Cortazzi)씨가 1960년대 중반부터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일본 古地圖를 수집해 직접 만들어 1983년 뉴욕파도쿄에서 동시 출간한 일본 고지도집(Isles of Gold ; Antique maps of Japan)에 실린 1291년작 大日本國圖와 1305년작 日本邊界圖 등에는 시마네현 위쪽의 오기(隱岐)섬과 대마도는 표시되어 있는데 독도는 빠져 있다.

또한 17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 全圖에는 지형과 지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독도는 없으며, 지도집에 실린 유럽인과 일본인이 제작한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자료를 김우준 교수는 2005. 3. 22 공개하였다.³⁷⁾

⑫ 1987년 일본의 호리가즈오교수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란 그의 논문에서 1877년 3월 당시 최고 국가 기관인 일본 太政官(수상)이 독도는 일본 領土가 아님을 선언³⁸⁾하고 시마네현에 통보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최고 권위의 史學者로 평가받고 있는 요시다 도고(吉田東伍)가 저술, 1900년 3월 31일 초판 인쇄된 “大日本地名辭書” 제3권 434 ~ 435쪽에서 독도가 조선 땅임을 시인한 책자가 발견되었다.³⁹⁾

있는 것으로 가로 82Cm, 세로 69Cm의 공식 지도에 일본 영토 범위에서 독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표시가 굵은 선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36) 방공식별지대란 영공 바깥쪽에 일정한 선을 그고, 그 안쪽을 레이더 감시하는 지역으로 설정, 이 지역 안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식별하고 적기 및 국적불명 또는 사전 연락이 없는 항공기의 침입에 대해 공군기를 긴급 발진시켜 상대기에 경고함과 동시에 영공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곳이다.

37) 2005년 3월 22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우준교수는 전 駐日영국대사였던 휴 코타지가 제작한 “일본 고지도집”을 공개하였다.

38) 일본은 명치유신후 일본 영토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작성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시마네현 지사

(島根縣知事)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 영토에의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받은 당대 제일의 정치·행정가 오꾸보도시미찌(大久保利通) 내무성장관은 동 島嶼들이 조선령이란 것을 인식하면서도 중요한 영토문제였기 때문에 수상(岩倉具視)에게 품의하였다. 그러나 일본 수상(岩倉具視)은 1877년 3월 29일 일본내무성의 시달 회신문서에서 “울릉도의 1도는 일본(本那)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확정짓고 일본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39) 일본 시마네대학에서 4년간 고대사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야마터(邪馬台)문제” 연구 소장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

⑬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島根)대 명예교수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76)는 역사적·국제법적 사례를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약하다고 하였다. 그의 지적을 보면 “일본 정부가 17세기 중반 에도(江戸)막부가 뜻토리한 요나고(鳥取藩 米子) 마을 주민에게 渡航허가를 내준 점을 실효 지배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매우 조잡한 설명이다”고 하였는데, “도항허가를 받은 마을 주민들의 집에 전해 내려오는 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막부로부터 拜領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봉건시대 토지는 모두 영주의 것으로, 설령 無人島라고 하더라도 막부가 마을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문서를 만든 것은 도항허가를 받은 인물들의 2, 3대 후손이며, 이들이 선조의 업적을 과대 평가하여 배령 등의 표현을 썼다”고 하였다.

또한 “에도막부는 1696년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독도의 영유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현재 일본 정부가 ‘당시 에도막부가 도항을 금지한 것은 울릉도에 국한되며 독도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도항금지에 따라 독도로 건너가는 사람들도 끊겼다.”면서 “당시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⑭ 또한 나이토 교수는 “明治시대에 접어들면서 울릉도로 건너가는 일본인들이 다시 나타나고 개발신청이 들어오자 이 정부는 1877년 울릉도와 ‘또 다른 하나의 섬’은 일본과 무관하다는 태정관의 판결이 있었다”고 말하였는데, 이 ‘또 다른 하나의 섬’은 독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일본이 과거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에 걸쳐 독도가 일본과 무관함을 강조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V. 海洋境界劃定에 있어 독도의 主權 및 結論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도는 일본이 직접 제작·발행한 지도나 책자 등을 통해서나 歷史的으로 또는 實效的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느 국가도 넘볼 수 없는 분명한 한국령土임을 고찰하였다.

이는 힘 있는 나라일 지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告示하고 남의 영토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독도가 1982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규정상의 島嶼로 볼 수 있는가를 고찰하여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동협약 규정에 의하면 島嶼를 첫째는, 滿潮時에도 수면 위에 솟아 있는,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陸地部分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는, 民間居住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있는 경우를 협약상의 島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정동 옥빛마을 박병식(76세)씨는 2005년 3월 04일 일본 최고 권위의 사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저술서적으로, 전체 8권으로 구성된 1986년 충보판 大日本本地名辭書 제3권에서 韓日간 독도 영유권 다툼이 1620년대와 1880년대 두 차례 벌어졌으나 그 때마다 독도가 조선땅임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서 조건을 갖춘 독도는 약 5,000만년 전에 자연스레 형성된 島嶼로 滿潮時에도 해발 168m 정도 부분이水面위로 솟아나 있고 54,000여 평이나 되는 바다로 둘러싸인 분명한 섬이다.

독도가 국제법상 섬인 것은 本人들의 自願에 의해 1981년부터 한국 民間人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식과 풍부한 海產物 채취 등으로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海洋安全을 위한 有人燈臺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찰경비대가常住하면서 領土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 섬 西島에서는 食水로 쓸 수 있는 自然水가 나오고 있으며, 많은 종류의 자연 동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 그리고 淨水器給水貯藏탱크 등 완벽한 급수시설을 갖추고 있다.

독도 常住인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가 있으며, 發電施設도 되어 있어 밤이면 불을 밝힌다. 船着場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통신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비상용 헬기 이착륙장도 있다.

① 그러므로 民間居住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실효적 지배권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라 가질 수 있는 領海接續水域EEZ 및 大陸棚 등을 마땅히 확보하여야 하며, 한국의 自主獨立을 의미하는 주권이 미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울릉도가 아닌 독도로부터의 12해리 영해 및 접속 수역 설정은 당연하며, 발행되는 독도 포함 모든 海圖에는 반드시 독도의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선(Baseline)이 적절한 기호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고, EEZ 境界劃定도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기준으로 하되, 물론 국제법상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예컨대 독도로부터의 EEZ설정 등 해양 경계 획정은 주변 국가와의 형평의 원리를 고려, EEZ설정 등에 난해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역을 정함에 있어 다각적인 연구와 깊은 통찰은 필요하다.⁴⁰⁾

즉 우리 나라가 독도로부터의 대륙붕과 EEZ선포 등을 선포할 경우, 중국이 上海로부터 69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중국령 통다오(童島)를 독도와 같은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74년 한·일 大陸棚共同開發協定 등으로 2028년까지 유효한 오끼나와(沖繩)까지의 中間水域開發權이나 동지나해 석유 등의 해저 자원을 중국측에 넘겨 줄 수도 있고, 제주도 남쪽 現일본령인 도리시마(鳥島)도 도서(섬)로 주장할 수 있다.

② 한편 한국의 독도로부터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은 일본의 그것과 중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년 4개월여 협상 끝에 1998년 9월 타결되어 1999년 01월 22일 발효한 2002년 01월 21일까지 유효 기간 3년인 제2차 한일어업협정⁴¹⁾

40) 현실적으로 한국은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 획정을 고려할 때 독도를 그 기점으로 할 때 해양영역이 중첩된다. 1982년 유엔해양법 제74조나 제83조에 의하면 인접국과 대향국간 EEZ 등이 중첩될 때에는 경계 획정에 있어 서로 합의하여 공평한 해결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1) 독도를 韓日간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3년 시효의 1999년 제

상의 독도 주변해역 중간수역 설정과는 별개로 고찰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변 해양의 경계 확정보다 우선은 독도 자체의 영유권 문제다.

그래서 정부도 “독도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한국의 영토가 분명함으로 독도문제는 한일문제보다도 상위개념”이라고 확고하게 대응하였다.

③ 만약 한국이 독도에서의 주권을 잃을 경우 주변의 해저자원과 황금어장은 밀할 것 도 없고, “온 국민이 30년간 쓸 수 있다는 청정 에너지원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는 주변의 영유 해양은 사라지며, 울릉도의 영유권도 넘보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현재도 발견 공개되고 있는 많은 자료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日·英·佛 등 국내외에서 제작된 많은 古地圖에서도 東海 및 독도를 韓國海와 한국땅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다.

④ 이런에도 문제는 오늘날 일본의 官民 특히 각국 주재 홍보기능 강화부서가 국제공론화를 위하여 세계 주요 도시의 도서관과 관공서 등에 홍보책자나 지도, 관광안내도가 배부, 비치되도록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⑤ 그래서 한국도 세계를 향한 공보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한국 全圖나 地球儀 제작 또는 항해용 海圖 등을 만들 때 독도의 분명한 한국령 明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나 선박 항해용 海圖 제작시 육지부분 못지 않게 바다 영해 부분 표시도 중요하므로, 가로 방향이 더 넓어지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지도에 표기되도록 한다.

⑥ 외국어로 된 영유권 자료와 영문판 海圖의 꾸준한 제작과 공급으로 세계 각국 선박에서 東海獨島 표시 자료와 한국판 해도를 구매사용 가능도록 海圖 발행 기능 등을 강화하여야 하고, 한국에 기항하는 모든 내외국 선박은 한국판 해도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항만국통체 공무원의 감독이 요구되며, 한국 연안 해도까지 일본판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국판 해도 제작에 치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⑦ 앞으로도 독도의 자연 생태계가 실린 우표나 화폐 발

2차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6월 체결된 제1차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1998년 11월 다시 체결하여 1999년 01월 22일부터 발효하였기 때문에 2002년 01월 22일 이후 양국 어느 한 쪽이라도 협정 파기를 선언하면 6개월 내에 협상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동해에 한일 양측이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이 설정되어 있고, 중간수역은 양측 연안으로부터 35해리 폭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개의 직선으로 연결된 다각형 모양이다. 그 동쪽 한계선은 135° 30'E, 서쪽 한계선은 131° 40'E(울릉도 동쪽 35해리점의 경도)이다. 대화퇴 어장의 반정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며,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1965년에 체결된 제1차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연안 12해리를 베타적 권리를 갖는 어업전 판수역으로 정하였는데, 1998년 1월 일본은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선언하고,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들을 나포해 법정에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일 양국은 2년 4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한일 신어업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어업협정과 한국 영토가 확실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별개로 볼 사안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중간수역 설정으로 韓日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일본에게 빌미를 준다면 평기도 검토되어야 한다.

행은 지속되어야 하고, 독도의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지나친 애지 중지 독도 관리지침으로 한 번에 30명을 초과하여 입도하지 못하게 제한하던 그 간의 출입 제한 조치를 아예 없애, 자연환경이 다소 훼손되고 그 파괴가 염려되더라도, 선착장을 보완하여 연중 항시적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의 체류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다.

그동안 환경보호, 국가안보, 안전 등을 구실로 독도 선착장에 발만 내딛는 제한적 입도가 아니라 희망하면 누구든지 주위에 올라 우리 영토 임을 발로 다지며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당국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⑧ 이어도(Socotra)의 해양과학기지와 같은 해양 및 지질 연구소 등을 설치하여 실질적 독도 지배의 강화, 온 국민의 실효적 독도 사랑이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⑨ 해양법상 해양 주권이 미치는 영해기선 설정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원칙에 위배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일본·북한 등은 영해기선으로 통상기선이 아닌 직선기선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동해안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통상기선을 채택하고 있고, 서남해안에서는 통상기선과 함께 보조적으로 직선기선을 채택하고 있는데, 동해안에서 뿐만 아니라 서남해안 등 全海岸에서 영해기선으로 通常基線 대신 直線基線을 채택하여야 한다.

⑩ 앞으로 한국은 독도 문제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무시적·소극적 대응보다는 홍보기능을 강화해 적극적·공세적으로 일본 못지 않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한국 영토의 침탈행위임을 알리고, 국정홍보처 등의 국내외 홍보자료, 책자, 지도, 해도, 지구의, 관광안내도, 국사교과서, 한국 입항 선박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표기나 주장이 억지, 오류이고 국제법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⑪ 헌법상의 부속도서 문제로 헌법 개정 논의시 大韓民國憲法 제3조의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대한민국 영토는 육지영토(또는 한반도)와 그 최극단 섬 마안도, 마라도, 독도 등을 포함한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⑫ 그러나 문제는 日외무성 소속 연구자들이 30년 넘게 독도를 연구해 오며, 간헐적으로 주장하는 그들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집착이 치밀한 각본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무리한 영유권 주장과 그들의 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볼 때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무력 충돌의 개연성도 전혀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檢索語(Key Words) : 시마네현(島根縣), 條例, 獨島, 오키(隱岐) 섬, 領有權, 主權, 實證的 資料, 常住人, 實效的 占有, 有人燈臺, 國際司法裁判所, 韓日漁業協定, 海洋境界劃定, 韓國領, エン海洋法協約, 領海, 接續水域, 排他的 經濟水域, 大陸棚, 通常基線, 直線基線, 三國史記, 世宗實錄地理誌, 古地圖, 朝鮮全圖, 海圖, 平和線, 東海, 韓國海, 渡航禁止, 憲法